

일본 사회의 ‘다문화공생’의 의미와 다문화공생사회로의 과제*

李 吉 鎔**

ih_kilyong@cau.ac.kr

〈 目 次 〉

- | | |
|-------------------|-----------------|
| 1. 들어가며 | 4. 다문화공생사회로의 과제 |
| 2. 일본 사회의 다문화화 현상 | 5. 나오며 |
| 3. 일본 사회의 다문화공생론 | |

Key Words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공생(coexistence),
정주외국인(permanent alien residents), 뉴커머(new-comers),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1. 들어가며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회 변화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이 다문화화 현상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집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9년 9월 30일 현재 1,149,493명에 달한다(불법체류자로 분류된 182,804명을 포함).¹⁾ 114만 9천여 명은 국내 거주인구의 2%가 넘는 숫자이다. 민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411-JO2001)

* 이 논문은 한국일본어문화학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2008년 11월 8일,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충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변인경 선생님 및 심사를 맡아 유익한 조언 및 제안을 해 주신 심사위원 세 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 중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사회언어학

1) http://www.immigration.go.kr/HP/TIMM/imm_06/imm_2009_11.jsp 참조

족, 문화, 언어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구성에 의한 다문화성의 증대 현상은 한국 사회에 다문화적인 사회로의 변화 및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학계의 각 분야에서 다문화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²⁾ 특히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의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의 모색이 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설동훈2004, 오경석 외2007, 윤인진2008). 캐나다³⁾ 및 호주와 같이,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복수의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해서 국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 및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⁴⁾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와 사례들을 분석하는 한편,

-
- 2) 전영준 (2009)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편 『다문화총서1 다문화의 이해 :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 도서출판 경진, 199쪽
- 3) 캐나다는 1971년에 서구 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등장하게 된 원인에는 (1) 선진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유입, (2) 1960년대의 인권운동으로 인한 내국인과 소수인종집단의 권리의식의 고양, (3) 민주주의의 확립, (4) 냉전의 종식으로 지정학적 안전의 확보와 그로 인한 소수인종집단을 억압하거나 통제할 필요성의 감소, (5)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의 존재 등이 있다(윤인진2008 : 77).
- 4) 다문화주의란 폭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으로, 대체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리킨다(윤인진2008 : 73). 다문화주의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의 한 예로 호주의 사례를 關根政美(1997 : 148-150)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언어·문화유지 촉진 프로그램(이민·난민의 전통 문화·언어의 유지와 발전을 추구)
- *에스닉 커뮤니티의 승인과 재정지원(가령 이민박물관 설립, 복지원·양로원 운영 등 복지 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부의 공적 재정지원)
 - *커뮤니티 언어에 의한 에스닉 미디어(TV·라디오 방송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
 - *에스닉 비즈니스의 정부에 의한 원조·장려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다문화 페스티벌 등의 적극적 실시
 - *비차별적 이주법의 실시와 동 이주법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
- (2) 사회참가 촉진 프로그램(이민·난민의 사회·정치 참가의 촉진)
- *호스트사회의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서비스
 - *통역·번역서비스의 충실(전화 통역서비스나, 재판, 병원, 경찰 등 공공시설에서의 통역서비스 확충)
 - *공공기관에서 다언어 출판물의 배부
 - *국외에서 취득한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자격(증)의 적극적인 인정
 - *성인 영어교육 프로그램
 - *특별 보장 조치

가까운 일본 사회의 ‘다문화공생론’에 대하여 보고한 사례도 있어(조상균2007, 주효진2008, 윤인진2008), 관심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실체가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거나,⁵⁾ 197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 거주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지던 재일한국인⁶⁾이 일본 사회에 요구한 ‘공생’ 개념을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2005년 6월에 총무성 산하에 결성한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에 있어서의 ‘공생’ 개념을 소개한 예가 대부분이다(조상균2007⁷⁾, 주효진2008). 그렇기 때문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다문화

—신착 이민·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 복지지원 프로그램

—교육·취직에서의 차별시정에 관한 적극적 조치

*영주자·장기체류자에 선거권 부여(affirmative action)

*인종차별 금지법 및 인종차별행위 벌칙법 등의 제정

*인종·평등위원회 등의 설치

(3)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촉진 프로그램(수용국 사람들에 대한 계몽)

*공영 다문화방송의 실시(TV, 라디오)

*학교·기업·공공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교육과 인권, 반차별교육을 포함함)

*다문화문제연구·홍보기관의 설치

*다문화주의법의 제정(다문화사회인 것을 공적으로 인지함)

5) 윤인진(2008)은 “한국 정부의 정책은 일본의 ‘다문화공생’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라고 지적하며(84쪽),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 지향’ 정책이고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99쪽). 그러나 이 연구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의 실체가 소개되어 있지는 않다.

6) 일본에 살고 있는 남북한의 동포를 지칭하는 호칭은,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 논문에서는 ‘재일한국인’으로 통일한다. 본문 중의 인용 등에서 나타나는 ‘재일’,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및 일본어 문헌의 ‘在日’, ‘在日韓国·朝鮮人’, ‘韓朝鮮人’, ‘在日コリアン’의 번역도 모두 ‘재일한국인’으로 통일한다. 재일한국인의 호칭 문제에 관해서는 박용구(2008:335-336)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7) 조상균(2007 : 348)은 ‘공생’ 개념의 출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의 새로운 환경의 변화, 즉 다문화 사회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무성 산하에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결성하고, 점차 정주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들 외국인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에서 설명하는 ‘다문화공생’이란 일본의 외국인 정책을 합축하고 있는 독특한 개념으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상호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 평등하게 공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생활해 가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개념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외국인 지원을 위해 탄생한 ‘다문화공생센터’의 헌신적인 지원활동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일컬어지기 시작한 1995년부터다.”(밑줄은 인용자의 의함)

공생 추진프로그램(2006년 3월)’에서 발표된 것처럼 ‘공생’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⁸⁾

현재 일본에서는 교육계·재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여·야당을 불문하고 ‘공생’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공생’ 그 자체는 ‘더불어 살자’는 공존, 상생의 개념이니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주의 및 공생론이 ‘작은 정부’와 ‘큰 국가’를 특징으로 하는 2000년대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출발했으며,⁹⁾ 신자유주의 개혁에서 경쟁과 선별(選別)의 원리로 유용되고 있기 때문에,¹⁰⁾ 1970년대 이후 재일한국인이 중심이 되어 주장한 ‘공생’ 개념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일본의 다문화공생론의 기원 및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공생’의 의미를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 ‘공생’이란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 다문화사회의 실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
- 8) 주효진(2008 : 99)은 ‘다문화공생 추진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문화공생 추진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데서 탈피해 공생관계로 설정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완비되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 제공,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일본인 주민의 의식개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9) 加藤千香子(2008b) 『日本社会と『共生』の再定義へ』朴鐘碩·上野千鶴子他著, 崔勝久·加藤千香子編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とは何か-在日の経験から』新曜社. 249頁
- 10) 上野千鶴子(2008) 『共生を考える』朴鐘碩·上野千鶴子他著, 崔勝久·加藤千香子編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とは何か-在日の経験から』新曜社. 218頁
- 11) 일본제국주의 시절에 ‘공생(共生)’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공영(共榮)’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1940년 일본 정부가 ‘대동아공영권’을 발표했을 때, 당시의 외무상인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였다. “私は年来皇道を世界に宣布することが皇国の使命であると主張してきた者であります、国際関係より皇道を見ますれば、それは要するに各国民、各民族をして各その処を得せしむることに帰着すると信ずるのであります”(加藤千香子2008b : 243에서 인용). ‘황도를 세계에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타국에 대한 주권침략행위를 동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전혀 자각적이지 못한 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 민족과 ‘공영’이 제창되었던 것이다(앞의 논문, 243쪽). 정부 주도 ‘다문화공생론’에서 ‘공영’의 기억을 되살린 것은 필자 한 사람뿐일까?

이하, 제2절에서 일본 사회의 다문화화 현상에 대해 정리하고, 제3절에서는 ‘다문화공생론’의 기원 및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공생’의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제4절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로의 과제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에 대해 검토한다.

2. 일본 사회의 다문화화 현상

2.1 일본 사회와 이문화 교류

일본은 섬나라이면서 근대에도시대에 300년 넘게 쇄국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적 균질성을 유지해 왔다.¹²⁾ 또 명치시대(1868년~1912년)에 ‘단일민족국가관’이 정립되고, 언어의 통일 등을 강행하여 사회의 균일성을 달성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들이 일본의 ‘단일민족신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전후 일본 사회가 풍부한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되는데, 일본의 경제성장의 기본 원리는 효율성의 추구였으나,¹³⁾ 일본의 정부 고위 관리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단일민족신화를 거론할 정도이다.¹⁴⁾

그러나 일본에는 선주민족으로 아이누민족과 오키나와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들은 최근에 와서야 일본의 다양한 문화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¹⁵⁾ 또한 일본 사회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에 의하여 도일하게 된 한국인과 중국인, 타이완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본 기업의 노동자로서 정책적으로 이입된 일본계 브라질인, 페루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른바 올드타이머(old-timers)와 뉴커머(new-comers)라 불리는 정주외국인(定住外国人, permanent alien resident

-
- 12) 蔵田雅彦(2000) 『アジアの民族共生と在日韓朝鮮人』徐龍達·遠山淳·橋内武編著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日本評論社. 85頁
- 13) 毛受敏浩·鈴木江里子編著(2007) 『国際交流·協力活動入門講座Ⅳ:「多文化パワー」社会』明石書店. 4頁
- 14) 徐龍達(2000a)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定住外国人の市民的権利の獲得と今後の展望』徐龍達·遠山淳·橋内武編著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日本評論社. 2頁
- 15) 아이누인들의 민족적 긍지가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고 더불어 일본 내 다양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누문화의 진흥 및 아이누의 전통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7년 법률 제52호)’이 199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일본 사회의 다민족국가 인식과 다문화공생사회 발전의 이정표가 되는 획기적인 법률로 평가 받고 있다(徐龍達2000a : 6-7).

s)16) 및 귀화 일본인이 증가의 일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¹⁷⁾

여기서 일본사회와 이문화 교류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본은 예로부터 이문화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다. 가령 중국·한국으로부터 ‘불교·한자·주자학’ 등 당시의 신문화를 받아들이고, 포르투갈로부터 ‘철포’라는 기술을 받아들였다. 또한 독일로부터는 ‘의학과 법률’을 받아들이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시스템과 민주주의’ 등을 받아들였다. 한편 일본사회가 호기심을 가질 정도의 신문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가치의 이질성’으로 치부되어 억압과 차별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아이누민족 등 일본 내 선주민족 및 외국인 노동자 등). 이러한 일본사회의 차별구조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질성의 추구하고 효율성의 추구라는 일본사회의 에토스(ethos)이다.¹⁸⁾ 이는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1> 일본사회의 차별구조

	효율적	비효율적
동질적	I 유형 : 일본인	II 유형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회적 차별)
이질적	III 유형 : 정주외국인의 자손 (제도적 차별)	IV 유형 : 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차별/제도적 차별)

<표1>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더하자면, II 유형은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유지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해당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편견과 오해 등 ‘사회적 차별’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일본인과 동등하게 고효율성을 유지하나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주외국인의 자손(III 유형)에 대해서는 참정권의 불인정 등의 ‘제도적 차별’이 인정된다. 또한 IV 유형과 같이 이질적인 저가치로 분류되는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차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16) 徐龍達(2000b) 「共生社会への地方参政権 : 定住外国人の市民的権利の獲得と今後の展望」徐龍達·遠山淳·橋内武編著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日本評論社. 22頁

17) 徐龍達前掲論文(2000a)4頁

18) 이길용(2008) 「일본의 다문화공생의 실태와 전망」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 연구사업단 정기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77쪽

수 있다.

2.2 일본 사회의 다문화화 현상

이렇듯 현대 일본의 문화는 일본 내 소수민족, 정주외국인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 통계를 통해 다문화화 현상에 대해 알아 보자.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의 2008년도 말 현재의 외국인등록자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자수는 2,217,426명으로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 일본의 총인구 127,692,273명(총무성 통계국의 '2008년 10월 1일부 추계 인구'에 의함)¹⁹⁾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출신지) 별로 보면 중국(대만·홍콩을 포함)이 655,377명으로 전체의 29.6%를 차지해 최대이다. 2006년도까지 최대였던 한국·조선은 589,293명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며,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브라질 출신자는 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그 수가 약간 줄었으나 과거 10년간 거의 매년 증가를 계속해 외국인등록자 총수의 14% 전후(312,582명)를 차지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패전 직후 재일한국인이 재일외국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한·일 국제결혼의 증가, 1985년에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법률 개정, 일본인으로서의 귀화 등의 요소에 의해 재일한국인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중국과의 국교 성립에 따른 중국인의 입국 증가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개정에 의해서 취업 및 정주가 인정된 브라질, 페루로부터의 일본계(외국)인의 증가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²⁰⁾ 이중 브라질인 커뮤니티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여 일본인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공간을 확보하려는 '분리거주'를 지향하고 있다. 당초의 '조화롭지 못한 상태(不調和な状態)'에서 상호 간의 조정 단계를 거쳐 '불만이 적은 상태(苦情の少ない状態)'로 경과하여 왔다.²¹⁾ 다문화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하여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각 문화를 연결시키고 조화롭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²²⁾ 그런 의미에서 일본 사회는 다문화공생사회로 진행되어 가는 과

19) <http://www.immi-moj.go.jp/toukei/index.html> 참조

20) 徐龍達前掲論文(2000a)5頁

21) 駒井洋(2003) 『多文化社会への道』明石書店. 32頁

정에 있으나, 현재는 ‘이문화병존사회(異文化並存社會)’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일본 사회의 다문화공생론

3.1 다문화공생론의 기원

지금까지 일본의 다문화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시적으로 이질적인 뉴커머와의 병존이라는 사회 현상으로부터 일본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다문화성에 관한 인식을 깊이 해 외국인 주민과의 공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일본 사회의 ‘다문화공생론’은 다문화주의의 변역 개념에서 생겨난 말²³⁾로 일본 사회에서 ‘공생론’은 다음 두 흐름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⁴⁾ 즉, 1970년대 히타치 취직차별 투쟁을 중심으로 한 일본 내의 소수자(재일한국인)가 요구한 일본 사회에서의 공생이 하나의 흐름이고, 1990년대 이후 뉴커머의 급증으로 인한 일본 사회와 정부의 대응책으로 마련된 공생이 또 하나이다. 다음에서 이 두 흐름에 대해 알아보자.

3.2 재일한국인이 요구하는 공생의 의미

먼저 재일한국인이 요구하는 일본 사회에서의 공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배경으로 재일한국인 60여만 명이 생겨났다. 구식민지 지배국에 정주외국인으로서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은 이미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명확한 정주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일한국인은 소수민족에 한없이 가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²⁵⁾ 그러나 일본 사회는 재일한국인을 언젠가는 귀화를 하거나 또는 조국으로 귀국할 사람들로 보고, 주권자인 일본 국민과는 이질적인 존재, 즉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간주하여,²⁶⁾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이분자로서 관리와 통제 의 대상으로 삼았다.²⁷⁾

22) 김홍운·김두정 (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인문학연구』제34권 제3호. 155쪽

23) 上野千鶴子前掲論文. 210頁

24) 加藤千香子前掲論文(2008b)246-248頁

25) 藏田雅彦前掲論文. 90-91頁

26) 加藤千香子前掲論文(2008a)15頁

그러한 가운데 1970년대 히타치 취직차별 투쟁²⁸⁾을 시작으로 재일한국인 2세를 중심으로 한 인권투쟁은, 재일한국인을 사회적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 사회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이의제기이다. 달리 말하면 소수자의 입장에서 일본 사회에 대해 ‘공생(共生, 共に生きる)’을 요구한 것이다.²⁹⁾ 일본 내 소수자가 요구하는 일본 사회에서의 공생은, Ⅲ유형(<표1> 참조)의 정주외국인의 자손에 대한 참정권의 불인정 및 지방공무원의 국적조항 등 ‘제도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다문화주의 이념 중 하나인 ‘평등의 요구’³⁰⁾가 중심이었다. 일본 사회 속에서 그 존재가 은폐되고 잠재화되었던 재일한국인이 요구하는 공생이란 정주외국인이 일본 사회에서 일본 국민들과 똑같은 시민적 권리를 인정받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인 것이다.

한편 히타치 취직차별 투쟁의 시기는, 가와사키시(川崎市)와 같이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해 외국인시책 등에 관해 선진적인 시정(市政)이 추구된 시기와 일치한다. 1971년 4월 진보파인 이토(伊藤三郎) 시장이 등장한 이래, 가와사키는 외국인시책의 선도지역이 되었다. 1986년 ‘가와사키시 재일외국인 교육기본방침 - 재일한국인의 교육을 중심으로’의 제정³¹⁾과 ‘후레이아기관(触れ合い館, 상호이해회관)’의 설립³²⁾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정주외국인의 대표적인 재일한국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책을 진행하면서, 가와사키는 행정계획에도 ‘다문화공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³³⁾ 다음과 같은 ‘공생정책’ 등도 등

27) 加藤千香子前掲論文(2008b)245頁

28) 1970년에 아이치현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종석 씨가 히타치 소프트웨어 도쓰카 공장의 채용시험에 내정(합격)되었다. 당시 이력서에 통칭명(新井鐘司), 본적란에는 아이치현이라 적었다. 회사 측의 호적등본 제출 요구에 박종석 씨가 재일한국인인 관계로 호적등본을 뗄 수 없다고 하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당했다. 1970년 12월 8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 제소하였으며, 제소로부터 4년 후 박종석 씨의 완전 승소 판결로 결정나게 된다(金命貞2007 : 65-67).

29) 加藤千香子前掲論文(2008b)246頁

30) 上野千鶴子前掲論文 215頁

31) ‘더불어 살다(共に生きる)’라는 말은 당시에 이미 재일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이 재일한국인과 일본인과의 연대, 상호존중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교육기본방침’에도 들어간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加藤千香子2008a : 21).

32) 후레이아관 조례에는 “일본인과 재일한국인이 중심이 된 재일외국인이 시민으로서 상호의 만남을 추진하고 서로의 역사·문화 등을 이해하며, 기본적인 인권존중의 정신에 근거한 더불어 사는(共に生きる) 지역사회의 창조에 기여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加藤千香子2008a : 22).

장하게 되며 ‘다문화공생’이라는 문구(praise)는 1990년대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 (1) 1993년 ‘가와사키 신시대 2010계획’에서 ‘다문화공생 도시 만들기 추진’ 이념을 제창
- (2) 1996년 가와사키시 시민국(市民局)에 ‘인권·공생추진담당 부문’을 설치
- (3) 1996년 지방공무원의 국적조항 철폐³⁴⁾
- (4) 1998년 ‘가와사키시 외국인교육기본방침-다문화공생사회를 목표로’

3.3 정부 주도하의 공생의 의미

한편, 1990년대 이후 올드타이머인 재일한국인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뉴커머의 급증으로 인한 일본 사회와 정부의 대응책으로 마련된 공생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계(외국)인의 등장은, 재일한국인과 같이 일본 사회에 정착해 있으면서도 불가시화되어 있던 외국인의 존재를 극명히 드러나게 하였다.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외국인에게 일본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의 따라 정부 주도의 ‘다문화공생론’이 퍼져갔으며, 2000년대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 과제에서도 ‘다문화공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³⁵⁾ 즉, 총무성은 2005년 6월에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공생’ 추진 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2006년 3월에 ‘다문화공생 추진 프로그램’의 제언-지역사회의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관하여’를 발표하였다. 기존에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데서 탈피해 공생 관계로 설정하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완비되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³⁶⁾ 또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국인 주민에 대

33) 加藤千香子前掲論文(2008a)22頁

34) 지방공무원의 3509개 직무 가운데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182개 직무를 남기고 기타 직무는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했다(崔勝久2008 : 155).

35) 加藤千香子前掲論文(2008a)11-12頁

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인 주민 측의 다문화공생에 관한 의식계 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³⁷⁾

- (1) 지역주민 등에 대한 다문화공생의 계발
- (2) 다문화공생의 지역 조성
- (3) 다문화공생을 테마로 한 교류이벤트 개최

이렇듯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일본 사회에서의 공생은,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가지적으로 이질적인 문화적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한다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가 중심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하의 ‘다문화공생론’이 기본적으로 일본인과 외국인의 엄밀한 구분, 차이를 전제로 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일본 사회에 적응을 유도한다는 행정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행정적 발상에 기초한 ‘공생’론은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의 서열관계를 유발함은 명확한 사실이다.³⁸⁾ 또한 배제와 동화와는 대조적인 낚임스가 함축된 ‘공생’이란 용어는 담론의 자원으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이후, 사회적 격차를 긍정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에 의해 경쟁과 선별의 원리로 유용되어 갔다.³⁹⁾ 즉, 외국인 중에서 국익에 부합되는 자를 선별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을 개인화하여 자기책임을 지우는 효율성우선주의에 유용되어 간 것이다.

한편 고이즈미 정권과 때를 같이 하여 2001년 11월 가와사키시장 선거에서 보수계인 아베(阿部孝夫) 씨가 당선되면서, 1971년 이후 이어져 온 가와사키시의 혁신적 시정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진보파 정권 때 외국인시책이 전진하고 보수파 정권 때 후퇴하는 점은 아마도 한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6) 주효진 (2008) 아시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99쪽

37) 毛受敏浩·鈴木江里子編著前掲書. 43頁

38) 加藤千香子前掲論文(2008b)248-250頁

39) 加藤千香子前掲論文(2008a)28頁

4. 다문화공생사회로의 과제

이상으로 일본 사회의 다문화공생론에 있어서의 공생의 의미에 관하여, 재일 한국인이 요구하는 공생의 의미와 정부 주도하의 공생의 의미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일본 사회에서 다문화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⁴⁰⁾ 이러한 제언도 참조하면서, 본 논문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로의 과제를 정리하면, (1) 사회적 차별의 개선, (2) 제도적 차별의 철폐라는 두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먼저 (1) 사회적 차별의 개선에 관해서는 일본인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일본 주민의 이질성과의 접촉 경험을 살려, 병존 상태인 다문화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정신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진행 중인 변화(change in progress)’ 상태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의 과제로 지적되는 ‘마음의 벽’을 넘어 상호 소통적 융합을 위한 노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꼽을 수 있다.⁴¹⁾ 2001년 외국인 밀집지역(도쿄 도요시마구, 가나가와현 아마토시, 군마현 이세자키시)의 의식조사(<그림1>⁴²⁾ 참조)의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경계에 위치하는 인물’ 즉 외국인 주민과 교류가 있는 중요인물(key person)이 존재하며, 일본인 주민이 외국인 주민과 교류가 있으면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40) 예를 들어 야마다(山田貴夫) 씨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안해 놓은 바 있다. 즉, ‘다문화공생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키워드’는 (1) 내외인 평등주의의 철저, (2) 민족문화종교 등의 차이를 존중하고, ‘아이덴티티 보전의 권리’를 승인할 것, (3) 시민으로서 ‘주민자치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 (4) 전쟁책임, 특히 가해자책임의 자각 등을 열거하고 있다 (崔勝久2008 : 186에서 재인용).

41) 毛受敏浩·鈴木江里子編著(2007) 『國際交流・協力活動入門講座Ⅳ : 「多文化パワー」社会』明石書店. 43-49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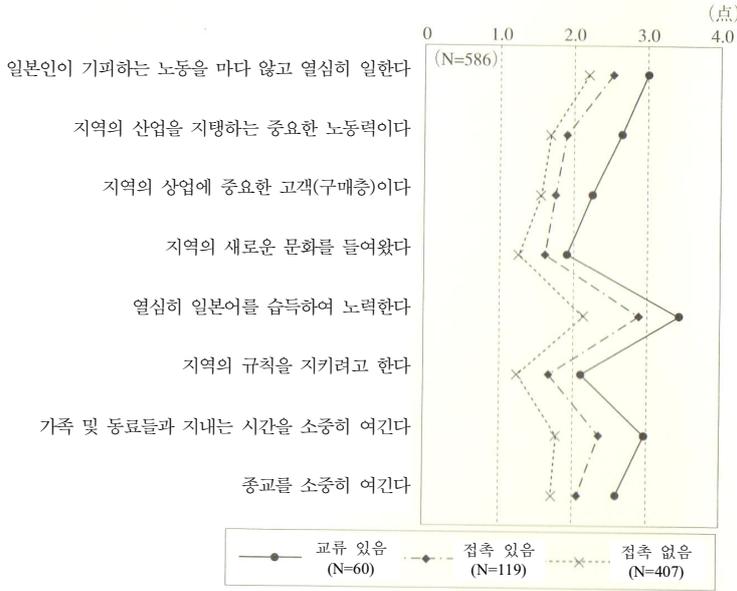
42)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에 거주하는 만20~75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각 지역의 선거인명부에서 500명을 2단계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법은 방문면접법을 실시하였다(毛受敏浩他編著2007 : 68).

43) 한국 사회보다 20여년 전에 다문화가족 문제에 직면한 일본 야마카다(山形)현 쇼나이 지방에서 다문화가족 문제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여 왔는지를 분석한 김범수(2007)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공헌하는 중요인물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 참여

둘째 다문화가족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 사람의 헌신적인 활동

<그림1> 교제 정도에 따른 지역 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평가의식



※ 교류 있음: 가족 단위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세상사는 이야기(世間話)를 하는 사람이 있다
 접촉 있음: 인사 정도 하는 사람이 있다
 접촉 없음: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

다음으로 (2) 제도적 차별의 철폐에 관해서는, 과거 지배·피지배의 역사에 있어서의 전후보상문제와 정주외국인에 대한 법적 처우문제가 일본이 다문화 공생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44) 즉 과거의 지배와 피지배의 역사로부터 파생한 일본의 ‘전상병자 전몰자유족 등 원호법’에 의한 전후보상이나, 호적법에 의한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박탈문제 등이 공생사회

- 셋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설립 운영
- 넷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언어 교육을 지원
- 다섯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음식축제나 의상 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여섯째 다문화가족 사업을 관광사업과 연계

44) 徐龍達前掲論文(2000a)11-12頁

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공생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스스로가 ‘국적의 벽’을 철거하고 모든 차별 행정을 철폐하여 정주외국인을 지역사회의 구성원, 같은 동료로서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은 일본 정부의 전후책임의 완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외국인의 인권옹호법 정비도 시급하다 하겠다.⁴⁵⁾ 외국인을 받아들여 발전해 온 나라들은 법률에 의해 이주외국인의 권리를 지켜왔다. 한국에서도 저출산화, 고령화, 고학력화라는 사회적 기반 변화를 배경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 2005년 6월 말 한국 국회는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경과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선거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⁴⁶⁾ 또 2007년 7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⁴⁷⁾이 시행되어 종합적 정책으로서의 외국인정책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되었다. 일본의 민주당이 지난 2009년 8월 30일의 중의원 선거에서 총의석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어 하토야마(鳩山由紀夫) 내각이 탄생하였다. 하토야마 내각이 법적·제도적 개혁을 통해 다문화공생사회의 공고화를 이루어 주기를 기대한다.

5.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일본 사회의 다문화공생론의 기원 및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공생’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로의 과제를 정리하

-
- 45) 川村千鶴子(2008) 『ディアスポラ接触—地域が日本を越えるとき』川村千鶴子編著 『「移民国家日本」と多文化共生論—多文化都市・新宿の深層』明石書店. 380頁
- 46) 総谷智雄(2006) 『外国籍住民への排除と同化の圧力』朴一·太田修他 『「マンガ嫌韓流」のここがデタラメ』コモンズ.
- 47) 2006년 11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키로 의결하였고,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한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에 있다.

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 있어서 다문화사회의 실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먼저 제2절에서 일본의 다문화화 현상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제3절에서 일본에서의 ‘다문화공생론’의 기원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일한국인이 요구하는 일본 사회에서의 공생의 의미는 ‘제도적 차별’을 시정하는 ‘평등의 요구’가 중심이고,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공생의 의미는 문화적 소수집단을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이지만, 경쟁과 선별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발상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제4절에서는 일본의 다문화공생사회의 과제를 (1) 사회적 차별의 개선, (2) 제도적 차별의 철폐로 요약 정리하였다. ‘공생’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더불어 살자’는 의미로 그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긍정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공생’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 유용, 도용, 동원될 수 있는가, 그러한 가능성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⁴⁸⁾

여기에서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검토해 보자. 먼저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가부장적인 동화정책이며(윤인진2008 : 72, 이선옥2007 : 100),⁴⁹⁾ (2) 다문화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이익이라는 국익 우선의 시각을 반영하고(문경희2006),⁵⁰⁾ (3) 한국 국민의 다문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며,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이 동화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요인이 작용한다(손철성2008 : 1-7)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다문화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제언을 하고 있는데,⁵¹⁾ 중요한 것은 다문화정책의 실행이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상호 공

48) 上野千鶴子前掲論文. 231頁

49) 손철성(2008 : 9)도 최근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화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인권이나 후생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많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 언어나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주를 이루어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도 적응과 동화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50) 윤인진(2008 : 79)에서 재인용. 이렇게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이용한다면 이주자, 특히 저숙련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존할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한 공존을 위한 약자적 위치의 문화를 보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⁵²⁾ 한국인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자문화만을 중심적인 가치로 인식하거나 소통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주민의 동질화를 지향하는 정책에 대한 요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한국인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력이 뛰어날 경우, 이주민 집단과의 사회적 관계 설정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⁵³⁾ 또한 한국은 이민국가가가 아니고 민족국가라는 점,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크다는 점, 혈통적 민족주의가 강하다는 점 등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고 이러한 점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⁵⁴⁾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재한외국인의 인권에 대해 냉담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는데, 더불어 살아야 할 상대방의 인권에 공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김남일 2007 : 149)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나아가 한국인 자신의 인권에도 관심이 희박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적 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시스템을 시정해 가는 것이 곧 ‘외국인과

51) 현재의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불법체류자’와 관련이 많다. 예를 들면 박재영(2009 : 122)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첫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응과 대처, 둘째,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법적 지위 부여, 셋째,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보장 등이 시급한 과제라 하였다. 또 윤인진(2008 : 99-100)은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국익증진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다문화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1단계에서는 모든 외국인의 기본적인 성격의 인권보장을 충실히 하고 특히 여성, 자녀, 난민인정자 등 소수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2단계에서는 숙련 기능 인력의 장기체류와 정주를 허용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문화주의가 성숙해진 3단계에서는 이민과 귀화의 문턱을 낮추고 이민자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하여 소수차별금지 정책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2) 홍기원 (2007)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19-920쪽

53) 홍기원 앞의 논문. 915쪽

54) 윤인진 앞의 논문. 99쪽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이며, '공생'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參考文獻>

- 김남일(2007)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정책 방향」 『한국사회학회 2007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 자료』 pp.147-179
- 김범수(2007) 「일본 아미카카(山形)현의 다문화가족 지원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 『다문화가족연구』2007.4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pp.55-76
- 김홍운 · 김두정(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인문학연구』제34권 제3호. pp.153-176
- 문경희(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제16집(3호). pp.67-93
- 박재영(2009) 「유럽 다문화사회의 문화충돌 : 영국 · 프랑스 · 독일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편 『다문화총서1 다문화의 이해 :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도서출판 경진. pp.97-122
- 박용구(2008) 「제일코리안의 문화적 갈등과 분화하는 정체성」 『일어일문학연구』제64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331-350
- 설동훈(2004)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배경」 『실천문학』74호. 실천문학사. pp.220-230
- 손철성(2008)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철학연구』제107집. 대한철학회 논문집. pp.1-26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한울아카데미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42집 2호. pp.72-103
- 이길용(2008) 「일본의 다문화공생의 실태와 전망」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 연구사업단 정기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pp.70-100
- 이선옥(2007)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운동과 다문화주의」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한울아카데미. pp.82-107
- 전영준(2009) 「한국의 다문화연구 현황」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편 『다문화총서1 다문화의 이해 :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도서출판 경진. pp.198-211
- 조상균(2007) 「일본의 다문화정책과 재일동포의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제7권 1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pp.347-383

- 주효진(2008) 「아시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89-104
- 최성환(2009)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전망」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 콘텐츠연구사업단 편 『다문화총서1 다문화의 이해: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 도서출판 경진. pp.10-28
- 홍기원(2007)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909-928
- 上野千鶴子(2008) 「共生を考える」朴鐘碩·上野千鶴子他著, 崔勝久·加藤千香子編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とは何か-在日の経験から』新曜社 pp.192-237
- 梶田孝道(1992) 「『多文化主義』のジレンマ」 『世界』1992年9月号. pp.48-65
- 認谷智雄(2006) 「外国籍住民への排除と同化の圧力」朴一·太田修他 『マンガ嫌韓流』のここがデタラメ』コモンズ. pp.151-172
- 加藤千香子(2008a) 「『多文化共生』への道程と新自由主義の時代」朴鐘碩·上野千鶴子他著, 崔勝久·加藤千香子編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とは何か-在日の経験から』新曜社 pp.11-31
- 加藤千香子(2008b) 「日本社会と『共生』の再定義へ」朴鐘碩·上野千鶴子他著, 崔勝久·加藤千香子編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とは何か-在日の経験から』新曜社 pp.242-251
- 川村千鶴子(2008) 「ディアスポラ接触-地域が日本を越えるとき」川村千鶴子編著 『「移民国家日本」と多文化共生論-多文化都市・新宿の深層』明石書店 pp.75-110
- 金侖貞(2007) 『多文化共生教育とアイデンティティ』明石書店
- 蔵田雅彦(2000) 「アジアの民族共生と在日韓朝鮮人」徐龍達·遠山淳·橋内武編著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日本評論社. pp.84-93
- 駒井洋(2003) 『多文化社会への道』明石書店
- 徐龍達(2000a)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 定住外国人の市民的権利の獲得と今後の展望」徐龍達·遠山淳·橋内武編著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日本評論社. pp.1-18
- 徐龍達(2000b) 「共生社会への地方参政権: 定住外国人の市民的権利の獲得と今後の展望」徐龍達·遠山淳·橋内武編著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日本評論社. pp.19-49
- 徐龍達·遠山淳·橋内武編著(2000) 『多文化共生社会への展望』日本評論社
- 関根政美(1997) 「多文化主義国家オーストラリアの誕生とその現在」西川長夫, 渡辺公三, ガバン·マコーマック編著 『多文化主義·多言語主義の現在』人文書院 pp.147-164

- 崔勝久(2008) 『『共生の街』川崎を問う』朴鐘碩・上野千鶴子他著, 崔勝久・加藤千香子編 『日本における多文化共生とは何か-在日の経験から』新曜社. pp.151-190
- 西川長夫,渡辺公三,ガバン・マコーマック編著(1997) 『多文化主義・多言語主義の現在』人文書院
- 毛受敏浩・鈴木江里子編著(2007) 『国際交流・協力活動入門講座Ⅳ : 「多文化パワー」社会』明石書店

접 수 일: 12월 31일
심사완료: 01월 08일
게재결정: 01월 29일

<要旨>

日本社会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意味と多文化共生社会への課題

本稿は、韓国における多文化社会の方向性を模索するための基礎資料づくりの一環として、日本社会における多文化共生論の起源および展開過程を分析し、「共生」の意味を批判的に検討したものである。日本の多文化共生論の起源は、1970年代の日立就職差別裁判闘争をきっかけとする、日本社会の中でその存在が潜在化されていた在日韓国人の人権運動に求めることができよう。定住外国人としての在日韓国人が日本社会に要求した「共生」とは、「制度の差別」の撤廃を中心とする「平等の要求」である。一方、1990年代以降、在日韓国人とは出自を異にするニューカマーの急増を背景に、日本社会の対応として生まれた「共生」は、文化的マイノリティー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認める「承認の政治」と位置づけられる。しかし、これは、日本社会への適応を促すという必要から生まれた行政的発想に立つ「共生」論であって、「日本人」と「外国人」の厳密な区別を前提とし、日本人への同調を求めるニュアンスが含まれているものである。「共生」ということばは、本来、異なる背景をもつ者同士が相互の違いを認め合いながら交流や理解をはかろうとする点で、排除や同化とは対照的な意味で使われたものである。そのため、説得の資源として利用価値があり、社会的格差を是認するネオ・リベラリズムの競争と選別の原理として流用されていく。「共生」がどのような文脈においてどのように使用、流用、盗用、動員されるのかという可能性にいつも注意深くなければならない。